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. 4. 5 선고 2022가단2796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고(선정당사자) B

변 론 종 결 2023. 3. 22.

판 결 선 고 2023. 4. 5.

주 문

1.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와,
가. 피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,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3 지분에
관하여 2018. 12. 2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,
나. 피고(선정당사자)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2018. 2. 25.
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취소한다.
2. C에게,
가. 피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제1항,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(선정당사자),
선정자들 별로 각 1/26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. 7. 11. 접수 제25403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,
나. 피고(선정당사자)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
2019. 7. 11. 접수 제254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 중 1/5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(선정당사자)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C에게, 피고(선정당사자, 이하 피고라 한다),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제1항,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, 선정자들 별로 각 1/20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. 7. 11. 접수 제254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. 7. 11. 접수 제254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D 주식회사는 2015. 8. 25. C에 대하여 중고차 오토론 계약에 기한 채권을 취득하였고, 2018. 3. 15. 주식회사 E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, 주식회사 E는 2020. 6. 5. 30.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여 원고는 2022. 12. 30. 기준 C에 대하여 50,918,07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.

나. F이 2018. 12. 25.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G, 자녀 피고, 선정자들(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‘피고들’이라 한다), C는,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1항, 제2항 부동산을 각 1/4 지분씩 공동 상속하고, 피고가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처분행위’라 한다)를 하였다.

다. 이 사건 처분행위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, 제2항 각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. 7. 11. 접수 제25403호로,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. 7. 11. 접수 제2540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한편, C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(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),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수한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으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.

나.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).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귀속시켰으므로,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.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C가 F 생전에 이미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아가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,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구체적인 특별수익 내역과 그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.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행위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,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행함이 원칙이므로, C에게,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,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 별로 각 1/26 지분($= 1/4 \times 2/13$)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. 7. 11. 접수 제254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. 7. 11. 접수 제254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제1항,

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들 별로 각 1/20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/5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나,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의 상속지분은 2/13이므로,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)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안민영

선 정 자 명 단

- 1. B
- 2. H
- 3. I
- 4. J
- 끝.

부동산의 표시

1. 충주시 K 전 984㎡
2. 충주시 L 전 1,025㎡
3. 충주시 M 전 710㎡ 끝.

